

case
10

배추김치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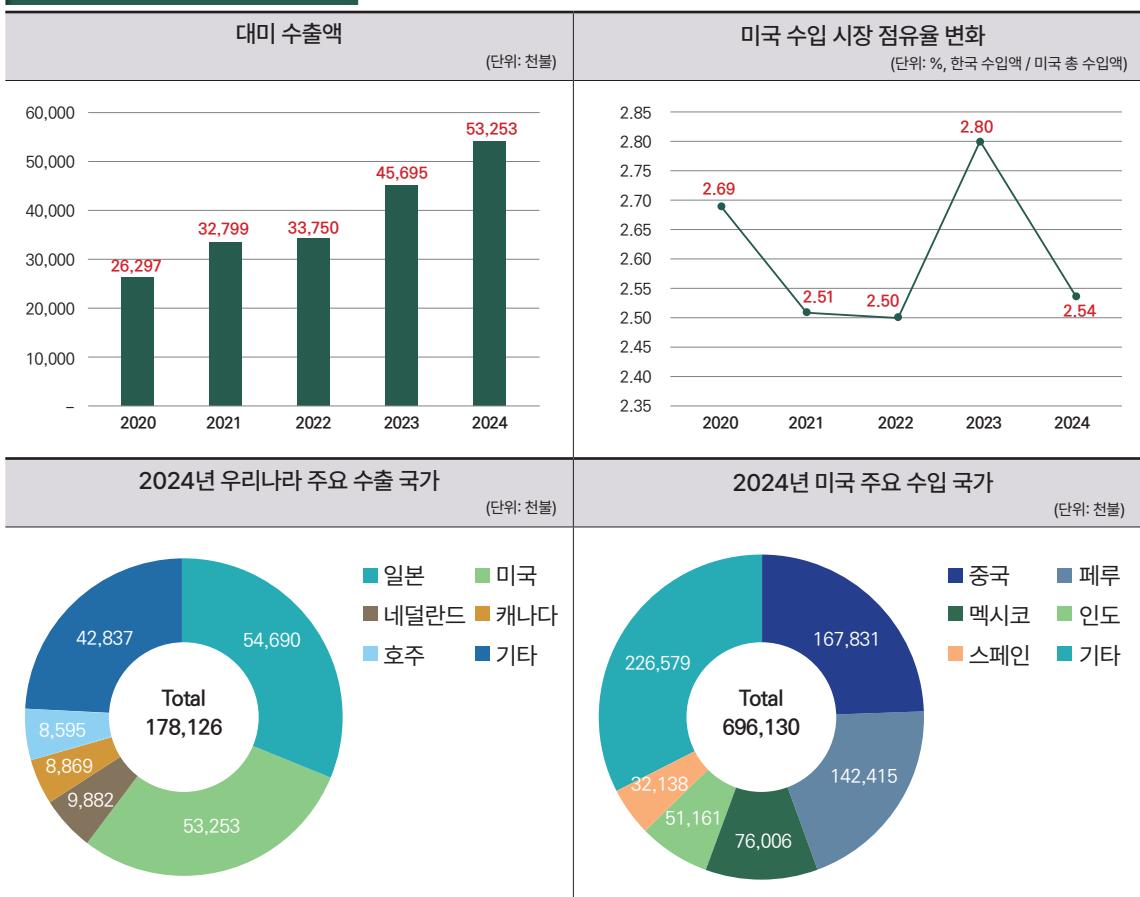
사례명	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및 한-미 FTA 적용 여부
사례번호	NY N350768 (2025.07.28.)
사실관계	중국산 절인 배추, 고춧가루,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산 재료들과 속을 섞고 발효하여 완성된 양념 배추김치를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중국산 절인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,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</p> <p>② 한-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</p> <p>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, 고춧가루,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어 세번변경요건이 충족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되며, 한-미 FTA에 따른 특혜 적용이 가능함</p>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HTSUS(19 U.S.C § 1202) General Note(GN) 33(o)/chapter 20/1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

HS Code	제2005.99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20%
	미국 기본세율	0~14.9% or 0.8¢/kg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. 다만,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.	

제8414.59호 시장 정보



❖ 자료: K-stat

(II) 판정사례

사례명 [배추김치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및 한-미 FTA 적용 여부

사례번호 NY N350768 (2025.07.28.)

사실관계

요청자 Banchandanji Co., LTD. (대리인: JangBaek Customs Attorney)

제품	제품명	• 김치
	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절인 배추 (중국산) • 무 (한국산) • 멸치액젓 (한국산) • 고춧가루 (중국산) • 냉동 마늘 (중국산) • 설탕 (한국산) • 생강 (한국산) • 찹쌀가루 (한국산) • 정제 소금 (한국산) • 글루탐산나트륨 (한국산)
	용도	• 식용
	완제품 HTSUS	• 2005.99.9700

제조공정



- 상세공정**
1. 중국산 절인 배추, 고춧가루,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
 2. 한국 제조공정
 - 무, 마늘, 생강을 다져 물과 찹쌀가루를 넣고 끓인 후 식힘
 - 고춧가루와 기타 재료를 넣어 양념 완성
 -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림
 - 밀봉 용기에 넣어 저장소에서 발효(0~10°C 온도에서 1~7일 발효)
 - 10kg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
 3. 미국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- ✓ 한-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▣ 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▣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-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: 새로운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 획득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CPA 267, C.A.D. 98 (1940)

-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

❖ 참고 판례: *CBP Ruling NY N348683 (2025.06.05.)*

- 사례** 그리스산 올리브를 스페인에서 세척, 발효, 선별 및 씨 제거하고 피망이나 치즈와 같은 속재료를 넣은 후 병이나 캔에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
- 판정** 그리스산 올리브는 수입 시점에도 올리브이고 스페인에서의 가공 후에도 올리브이므로 실질적 변형 불인정

❖ 참고 판례: *CBP Ruling NY N326044 (2022.06.08.)*

- 사례** 스페인에서 재배된 생마늘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기에 넣고 토스트 처리한 후 소량의 쌀겨와 혼합하여 흑마늘 시즈닝 생산
- 판정** 스페인산 마늘이 여전히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흑마늘 시즈닝의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판정

❖ 참고 판례: *CBP Ruling NY N308973 (2020.02.24.)*

- 사례** 미국에서 재배, 수확, 탈각한 콩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, 혼합, 세척,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침지, 가열 및 증기처리 함
- 판정** 실질적 변형 불인정

판정 결과

- ▣ 중국산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,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한-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

관련 법령 검토

- 제2005.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, 『HTSUS(19 U.S.C § 1202) GN 33(o)/chapter 20/1』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
 -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. 다만 제20류의 주석¹⁾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.

판정 결과

-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, 고춧가루,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어 세번변경 요건이 충족되므로 한국산으로 판정되며, 한-미 FTA에 따른 특혜 적용이 가능함

기타 의견

- 해당 제품은 『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(42 U.S.C. § 262)』의 적용 대상이며,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

결론

- ✓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이며, 한-미 FTA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임

III 시사점

- 미국 수출 물품의 경우 한-미 FTA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특혜원산지 기준과 제301조, 제232조, IEEPA 등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상이하여 이중 원산지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특혜원산지뿐만 아닌 비특혜원산지 목적의 원산지 관리도 필요함

IV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50768 (2025.07.28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50768>
- CBP Ruling NY N348683 (2025.06.05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48683>
- CBP Ruling NY N326044 (2022.06.08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26044>
- CBP Ruling NY N308973 (2020.02.24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08973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l/part-1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HTSUS(19 U.S.C § 1202) GN
- 33(o)/chapter 20/1, <https://hts.usitc.gov/>